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7. 14.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6월 2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7. 2)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 안 설 명 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9조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노인 및 주민대상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명칭 및 위치, 사업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수탁자의 운영규정의무, 지도 및 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제4조 제1항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로 하고,
- 제4조 제2항 중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23 호
----------	--------------

제안년월일 : 2009. 7.
제 출 자 : 운동규 위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4조 제1항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로 하고,
- 제4조 제2항 중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 제1항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로 하고,
- 제4조 제2항 중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조(위탁운영)①..... , <u>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u> 에..... ②..... <u>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u> (<u>이하 “수탁자”라 한다.</u>)와.....	제조(위탁운영)①..... , <u>보건의료 관련 기관</u> 에..... ②..... <u>위탁받은 기관</u> (<u>이하</u> <u>“수탁자”라 한다.</u>)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지원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조기검진 사업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사업
3. 치매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5.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6. 치매환자의 노인전문 의료·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7.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

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조금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3 호
----------	---------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성 만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바,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재활 등을 포괄 관리하는 구 단위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1) 명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
- 2)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치매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1) 치매조기검진 사업
-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사업
- 3) 치매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4)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5)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 6) 치매환자의 노인전문 의료·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 7)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다.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정함
-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구청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준수토록 정함.

마.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1)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함.
- 2)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정함.
-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정함.

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1)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나. 예산조치 : 2009년 1,375,500천원 예산편성

다. 합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09. 4.23 ~ 2009. 5.13]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지원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조기검진 사업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사업
3. 치매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5.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6. 치매환자의 노인전문 의료·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7.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조금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